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66호 2020. 5. 21.(목)

## 고 시

-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1호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 1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644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5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66호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1호

##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천시 고시 제2019-277호 (2019.12.09.)로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 된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 055-835-443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21일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 고 시 내 용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583번지
  - 2) 이전고시 면적 : 28,749.1㎡, 실사용대지면적 : 28,749.1㎡
3.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 및 성명
  - 1) 사무소 : 경상남도 사천시 숲외길 14-8 (향촌동)
  - 2) 성 명 :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김영고)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최초) 2012.07.06. (최종) 2020.04.20.
5. 준공인가일 : 2019.12.09.
6. 공사완료 고시일 : 2019.12.09.

# 사 천 시 공 보

제666호

## 7. 이전고시 내역

### 1) 토 지

구 분		위 치		지 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이전고시 면적 계					28,749.1	
획지	공동주택	동금동	583	대	28,749.1	
	소 계				28,749.1	

\* 종전 토지의 표시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20-4번지 및 38-1번지

### 2) 건축시설

구 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 고
연면적(m <sup>2</sup> )	86,454.5265	640.5180	87,095.0445
동 수	7	1	
층 수	지하1층 ~ 지상21층	지상2층	
세대수(호수)	617세대	10호	627

### 3) 이전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관리신고(관리종류별)		
소계	근저당권	기타
1	1	-

# 사 천 시 공 보

제 666 호

## 4)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공급대상	주택 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계	59.9299 (59A)	59.9303 (59B)	59.8452 (59C)	74.6012 (74)	84.3848 (84A)	84.9041 (84B)	103.1260 (103)	110.2891 (110)
계	617	40	80	80	40	137	160	40	40
토지등 소유자	323	35	65	52	36	61	44	19	11
일반분양	292	5	15	28	4	75	115	21	29
보류시설	2	-	-	-	-	1	1	-	-
공급대상	상가 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호수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	
	계	40.1220	43.9800	50.3750	50.5440	54.7800	55.9669		
계	10	1	1	1	2	3	2	-	
토지등 소유자	10	1	1	1	2	3	2	-	
일반분양	-	-	-	-	-	-	-	-	
보류시설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66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사 천 시 공 보

제666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0-64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 사 천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정 성 교	주소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9번지
소하천명		학촌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남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9		
	면적	42.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목적 및 사유	시설물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수도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